

제30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의안번호 제2324호)



2021. 6. 21.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

□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 양 순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동 조례안은 현재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학교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대신 위임관리로 일원화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음수대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돗물 음용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학교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